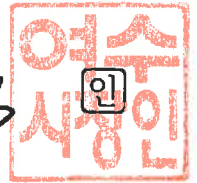


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린이집
안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5 월 8 일

여 수 시 장

장기명



여수시 조례 제2200호

붙임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1부

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어린이집”이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보육 및 건강관리 업무
 - 나. 보호자와의 상담 업무
 - 다. 어린이통학버스 운전 및 통학지도 업무
 - 라. 그 밖에 관리·운영 등 업무
4. “어린이통학버스”(이하 “통학버스”라 한다)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5. “어린이 안전보호 장비”이란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보호자와

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제4조(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)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중인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원장은 안전관리, 급식관리, 위생관리,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원장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안전 지도·점검 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·점검계획(이하 “지도·점검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도·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지도·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
2.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·점검에 관한 사항
3. 부모모니터링단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4.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·점검에 관한 사항

5.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·점검에 관한 사항
6. 지도·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
7.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항
8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부모모니터링단 구성·운영) ① 시장은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7조에 따른다.

제7조(안전보호 조치) ① 원장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집 원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 장비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)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 지원)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7조에 따른 안전보호 장비

2. 제8조에 따른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비용의 일부.
단,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를 신청하는 500세대 미만의
공동주택

3.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
조성을 위하여 여수교육지원청, 여수경찰서, 여수소방서 등과 상시적
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